의안번호	제 716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359회)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박한범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7년 9월 29일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

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716

발의연월일 : 2017년 9월 29일

발 의 자 : 박한범, 최광옥, 연철흠, 박봉순, 이언구, 임병운, 윤홍창

1. 제정이유

○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)

- 제호, 발행, 게재사항, 발행부서 등

○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)

-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, 임기, 운영 등에 관한 사항

○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
-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접수에 관한 사항

○ 광고에 대한 사항(안 제15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공보관과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.

라. 입법예고 : 2017. 9. 20 ~ 9. 25(5일간)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제호) 충청북도 도정소식지(이하 “도정소식지”라 한다)의 명칭은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제3조(발행) 도정소식지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. 다만,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회하거나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.

제4조(게재사항)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·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
2. 충청북도의회 의정소식 및 활동에 관한 사항
3. 농어업, 지역경제, 문화예술, 생활정보,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발행부서) 도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무는 공보관에서 주관한다.

제6조(위원회)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정소식지 종합기획·조정
2. 도정소식지 발행계획,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
3.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·조사·연구·편집
4.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보관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은 공보관으로 하고 위촉직은 6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도정소식지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희망한 경우
2.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11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자료수집) 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, 유관기관·단체, 도민홍보대사, SNS서포터즈,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.

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.

③ 독자와의 소통 및 공감 확산을 위해 독자투고, 사진기고 등 도민으로부터 접수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도정소식지 이벤트(퀴즈 등)에 참여한 도민들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배부) 도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, 배부처는 위원회가 정한다.

제15조(광고)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도정홍보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도정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충청북도 소식지 발행.

.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충청북도 소식지 발행 및 발송

3. 관련조문

○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(제3조)

○ 충청북도 도정소식지편집자문위원회 수당(제12조)

○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원고료 지급(제13조제3항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2017년도 예산 내역 : 380,800천원

- 소식지 발행 : 296,800천원
- 자문회의 등 수당 : 4,200천원(기획관실 위원회 수당)
- 원고료 : 18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 : '18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,024백만원 정도 소요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3차년도 (2020년)	4차년도 (2021년)	5차년도 (2022년)
세 출	**2,024,000**	**386,800**	**398,800**	**400,800**	**412,800**	**424,800**
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생	2,024,000	386,800	398,800	400,800	412,800	424,800

6. 작성자 : 공보관 이경태